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에 관한 질적 연구

신 명 신*

Qualitative Study on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in Korea

Shin Myung Shin*

요 약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는 2007년 새롭게 개정·공포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의 실시에 따라 평생교육의 안정적인 기틀이 마련되어 왔다. 그 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그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제도의 연혁, 평생교육법의 내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대하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 Keywords : 평생교육, 평생학습사회,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제도

Abstract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in Korea has given the stable groundwork of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for the embodi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society by Lifelong Education Act newly revised and promulgated in 2007. After that, the lifelong education in Korea has developed, getting the system. Therefore, in this point, this study theoretically provided the history of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the cont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current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Above all,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it discussed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in Korea in the comprehensive level.

▶ Keywords :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Society, Lifelong Education Policy, Lifelong Education Law, Lifelong Education Legislation

•제1저자 : 신명신

•투고일 : 2014. 1. 16, 심사일 : 2014. 1. 27, 게재확정일 : 2014. 2. 3

* 동강대학교 유아교육과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kang College)

를 전개하고자 한다.

I. 서론

평생학습사회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학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된 사회이다. 지식의 전수기능으로서의 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즉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은 가르치는 제도에서 배우도록 만드는 제도로의 전환 즉 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의 관점으로 전환되었다[1].

평생학습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평생교육사업 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사업을 정책으로 보지 않고 사업으로만 간주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미국 등은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정책이라도 평생교육정책을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다루어지는 평생교육정책들은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명명해도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겠으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거친 행동계획이므로 제도나 사업에 가까운 행동계획이라 할지라도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사업을 소극적 정책개념으로 규정하여 평생교육정책으로 간주하여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2].

평생교육정책의 대상자로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 투자하고 그러한 삶을 수행한 나머지 시간동안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동료 학습자들과의 대화와 지식교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과 관련성이 있는 학습을 원하며, 배운 것을 현업에 돌아가서 바로 적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학습자들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만큼 학습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자세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3]. 평생교육은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의 현실적 요청, 특히 교육기회의 증대, 사회 전체의 학습자원의 통합적 활용, 그리고 교육결과와 고용의 체계적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4]). 이러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그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제도의 연혁, 평생교육법의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의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

II.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배경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1982년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법령명을 개정하고, 법 내용을 전부 개정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문명으로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평생교육법」 체제를 통해서는 총체적인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2007년 12월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평생교육법」은 열린 학습사회와 교육사회를 지향하는 1995년의 5.31 교육개혁방안과 신 직업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1996년의 2.9 교육개혁방안의 기본 정신을 이어 받으면서 형성된 교육개혁 구상이 법제화된 것으로서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연결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5].

이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특성은 첫째, 평생교육은 융통성의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다. 둘째, 평생교육은 교육의 민주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의 원칙에 근거한다. 셋째, 평생교육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직업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평생교육은 개인, 조직, 사회, 국가에게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학습자들의 자발성을 특성으로 한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여섯째, 평생교육은 학습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2. 평생교육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7).

2-1. 인간의 성장과 발달

교육은 내적 요구와 외적 수요에 부응하면서 참된 의미를 달성해 나가야하는 과정에 있다. 그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 등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인구의 증가와 교육 수준의 향상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삶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인간의 욕구 충족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이다. 따라서 누구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구,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욕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며 살아간다.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2-3. 학교교육의 보완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에서도 활발히 실천되고 있다. 이제는 학교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학교교육을 곧 교육으로 보고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만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평생 동안 평생교육에 참여한다는 평생교육의 의의를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교육이란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격적 주체가 되도록 평생 동안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의지적인 학습활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교육이 추구되어야 한다.

2-4. 변화와 혁신

혁신을 위해서는 학습이 필수적이다. 학습은 이미 그 자체

로도 혁신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학습은 대상이 무엇이든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늘 머리를 쓰게 하기 때문이다. 학습은 단순히 무엇을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혁신을 이끌어 가는 순기능의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혁신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실행과정에서의 학습은 과거의 경험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접근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2-5. 지식기반사회

21세기 글로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은 지식기반경제 또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무형자산인 지식이 중요한 산업자원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식관리가 가능한 평생교육체제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체제를 잘 운영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여 조직 내에 신속하게 전달하며, 동시에 다양한 교육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저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효과적인 지식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모든 조직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III.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연혁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전체적인 연혁은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2000. 3월부터 본격적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데 평생교육정책의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시대적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학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의 경제문화사회적 발전과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으로 이전 보다 체계적인 추진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그 해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교육정책 추진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추진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제1차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이 평생교육의 외형적 확대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확산에 치중한 반면, 2차 계획에서는 산업 및 인적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생애단계별 발달과정과 학습과업을 연결하는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

을 위하여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의 역사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법적 근간은 제5공화국 때 헌법 제29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조항'을 명시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학교교육 이외에 평생에 걸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된 법은 '사회교육법'이다. '사회교육법'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법안이 마련된 후 30여년이 지난 1982년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교육법'은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케 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 복지사회의 건설과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이에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과 그 필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차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등의 제정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회교육법'은 학교교육법 중심이었던 '교육법'의 하위법처럼 대접 받는 법적 지위 상의 잘못을 드러내었고, 평생교육 관련법들의 모법으로서의 기능도 다하지 못함으로써 평생교육관련 제반 법규들이 위계성이나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법령들을 조정·통괄하는데 문제가 있는 등 사회 전반의 평생교육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다[9]. 따라서 이러한 '사회교육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국 1999년 8월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그 명칭과 내용이 전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탄생한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을 그대로 승계하는 형식을 취한다. 가령,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개념에 관한 사항은 구 사회교육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두 법 사이의 차이를 굳이 말하면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바꾸는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의 내용은 사회교육법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니는데, 이미 유명무실해진 법을 환골탈태하여 실제 시행이 가능하게 하도록 평생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제7조). 직장을 다니는 일반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제도 차원의 고려를 반영한다. 둘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구축하였다. 사회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 차원의 사회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정착 실제로 일을 할 조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정을 두지 않았다. 즉 머리는 있되 손발이 없는 상황이었다. 평생교육법은 이를 해소하고자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정보

센터", "평생학습관"을 국가와 지방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셋째, 평생교육시설을 세분화하였다.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을 도서관 및 박물관을 공공의 평생교육시설로 구체화하였고, 이외의 민간의 평생교육시설로 사설강습소(나중에 관련법 개정에 의해 "학원"으로 개정됨)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평생교육법은 시설 유형을 세분화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그 기준을 정하였다. 그 결과 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국가는 각종 정책사업을 내놓고 이를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된다[10].

IV.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의 내용

1. 평생교육법의 내용

1999년 개정된 법률이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평생교육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어 왔다. 2007년 12월 14일에 새롭게 개정·공포된 평생교육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평생교육법」의 주요 특징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이다. 「평생교육법」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평생교육 개념의 명확화이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 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한 점이다. 셋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학습비 지원 및 유·무급 학습휴가제의 도입이다. 직장인들이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해 자아실현과 능력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이다. 교육전문 인적자원 등을 대학의 시간강사, 각종 연수기관의 강사요원, 평생 교육활

등의 강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사정보은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 등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제의 정비이다.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하에 설치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게 된다.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일곱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3대 전담 지원기구를 운영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관련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정보 제공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기초 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평생교육사의 기능 및 양성·연수제도의 정비이다. 평생교육 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평생교육사의 양성·연수제도를 정비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육 전문가가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아홉째, 평생교육시설의 확대 및 설치자의 조건 강화이다.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제화 및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였다. 학교형태 또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등록·인가제를 유지하고 학력미인정시설의 경우 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신고제의 보고제 전환 등 설치·운영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열째,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운영 및 학력인정의 현행화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에 성인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및 성인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성인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11]. 이러한 평생교육법의 시행으로 평생교육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었고,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학력위주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를 유도하여 여러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기관 역시 다양화되어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였다[12].

2. 평생교육제도의 내용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내용은 특성별로 평생교육의 대상이나 지역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내용은 여러 가지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평생교육의 내용은 과학, 예술, 윤리도덕, 직업, 오락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3].

평생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 및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우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선진 국가들은 평생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 평생학습 선택 지원, 그리고 평생학습 평가인정 제도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평생교육 기회제공체제는 평생교육 활동의 기본적인 이념인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정비되어야 한다. 학교중심 교육체제에서는 학습 기회를 학교에서 전담하여 제공해 왔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생애 각 시기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광범위한 연령층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에 대응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조건이 정비되고 확충되어 평생학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기회 선택 지원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학습상당 및 학습정보 제공체제와 관련된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습기회뿐만 아니라 학습내용, 시설, 지도자, 교재, 각종 자격 등에 관한 종합적인 학습정보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종 학습정보를 수집, 정비, 보관하는 평생학습 DB를 만들고 학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

육을 총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대등한 또 하나의 교육부문에 평생교육 부문의 평가인정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학습 자체가 즐거워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습 성과를 자각화하거나 학점화 하여 사회적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이들과 학습 성과를 사회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층들도 많다. 따라서 학습 성과를 사회에서 적절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습자원과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을 가지고 학습자는 계획되었던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수료 후에는 그 학습효과가 사회에 환원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사회적 효과라는 것은 학습자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사회의 이익이 된다. 이 전체의 과정이 학습 평가 인 정체제이다[14].

V. 결 론

사회 변화와 함께 교육 체제도 학교교육 중심에서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차원에서는 재취업수단으로서 평생학습, 평생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은 학습조직화를 표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마을, 도시를 선언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을 외치고 있다[15].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대해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논의한 결과 최근 해마다 평생교육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타 선진국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평생교육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더불어 체계적인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Hee A, Kim. "A Study on the Stakeholder of Public School in Community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p.8, 2009.
- [2] Young Hee, Lim. "A Study on Achieving Adult

Learning Goals of Lifelong Education Policies in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p.5-6, 2010.

- [3] Ki Hwan, LI. "A Study on Learner's Motive of Participation and Satisfying Degree in The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With lifelong education by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in the center",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pp.3-4, 2003.
- [4] Kyong Tae, Kim.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to Police Retirement Management., Police Research, Vol.6 No.2, p.173, 2010.
- [5]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11-2012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p.5, 2013.
- [6] Kyoung-Shil, Park et al. "Lifelong Education", Hakjisa, pp.21-22, 2010.
- [7] Kyoung-Shil, Park et al. "Lifelong Education", Hakjisa, pp.26-34, 2010.
- [8] In-gyoo, Choi. "A Study on Perceptual Gaps among the Persons in charge of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p.1, 2013.
- [9] Ministry of Education, No.4.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p.78, 2000.
- [10] Young Sang, Ko. "The Changes of Lifelong Education Legislation in Korea and the Related Issues", Lifelong Education-HDR Research, Vol. 6 No 3, pp.7-8, 2010.
- [11]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11-2012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pp.6-9, 2013.
- [12] Ki Hwan, LI. "A Study on Learner's Motive of Participation and Satisfying Degree in The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With lifelong education by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in the center",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p.1, 2003.

- [13] Ki Hwan, LI. "A Study on Learner's Motive of Participation and Satisfying Degree in The Program for Lifeling Education: With lifelong education by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in the center",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p14, 2003.
- [14]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11·2012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pp.15-16, 2013.
- [15] Don min, Choi. "Restructuring College and University to Promote Regional Lifelong Learning Activi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 No.2, p.90, 2008.

저 자 소 개



신 명 신

1985년 :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경영학사
 1989년 :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인문학사
 2008년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2013년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수료
 현 재: 동강대학교 겸임교수
 유엔미유치원장
 관심분야: 평생교육, 유아교육
 Email : ssmmsk@hanmail.net